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18
----------	-------

발의연월일 : 2025. 6. 18.

발 의 자 : 김태호 · 이인선 · 우재준

정동만 · 성일중 · 이상희

조경태 · 박충권 · 신성범

정연욱 · 김종양 · 백종현

서범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

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광역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u>
⑥ (생 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u>제6항</u> 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7항</u> ----- -----

협약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